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궁능유적본부장으로의 업무 위임 근거 마련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2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궁능유적본부장으로의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제3항 신설)	2
※ [참고 1] 유사 입법례	8
[참고 2] 궁능유적본부 개요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Ⅲ. 검토의견

1. 궁능유적본부장으로의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56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업무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신 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1. 제3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u>설계승인</u> 2. 제33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u>현황의 보고</u>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령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¹⁾에 근거하여 조선의 궁궐·종묘·사직·왕릉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1)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971호)

제11장 궁능유적본부

제40조(직무)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복궁(7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승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 및 활용
2. 능·원·묘와 그 부속 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 및 활용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와 활용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승례문 포함), 창경궁, 종묘(사직단 포함)의 문화유산, 시설물, 수목의 보존·관리 및 활용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함) 제33조의2제1항²⁾에 따르면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발주자가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을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³⁾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³⁾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①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②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③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궁능유적본부의 보존·관리대상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는 모두 지정문화유산(사적)에 해당하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수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제33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업무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궁능유적본부의 보존·관리대상 지정문화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궁능유적본부의 장이 설계승인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현행 「국가유산수리법」 제56조제1항⁴⁾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법적 권한은 행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위임 업무의 종류를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할 경우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외에 다른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궁능유적본부 모두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이므로,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⁵⁾⁶⁾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궁능유적본부가 4대궁과 종묘, 조선 왕릉 등 국가유산을 직접 보존·관리하는 국가유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임에도 소관 국가유산의 수리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이 없어 행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바, 설계승인 권한 등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은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되는 국가유산청장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에 한정하고 있어, 현행법 제37조의4⁷⁾에 따른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수립 승인에 관한 국가유산청의 권한이 제외되어 있는바, 「국가유산

5)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령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바, 법률상의 조직이 아닌 궁능유적본부의 명칭을 법률에서 직접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함.

6)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의 ‘업무’ 일부를 궁능유적본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의 경우 위임과 위탁을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업무의 경우 위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은 권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리법」 제56조제1항과 같이 위임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 1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참고 2

궁능유적본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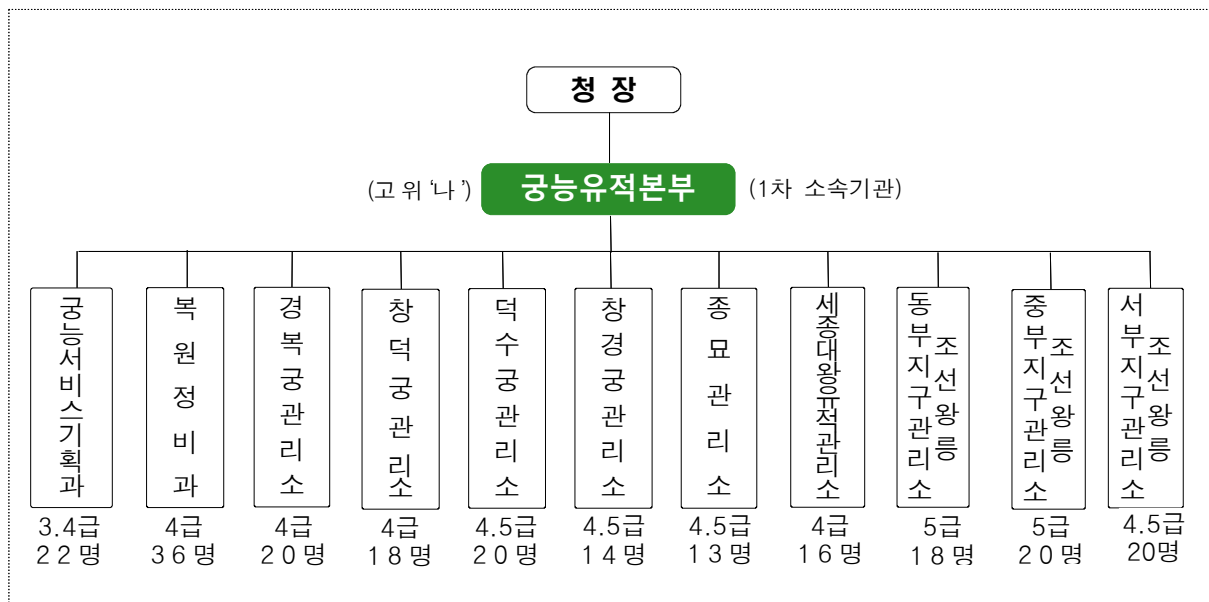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1. 임무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2025.9.10.)」)

- 궁·능의 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궁중문화의 발굴 및 재현, 궁·능 관람, 관광 자원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2. 조직 및 인원

- 조직 및 인원 : 2과 9관리소 / 정원 217명(현원 204명)



3. 예산 : 1,448억원 ('25년 1,594억원 / △146억원, △9.2%)

(단위: 백만원)

구분	'26예산 (B)	'25예산 (A)	증감 (C=B-A)	증감율 (C/A)
합계	144,839	159,454	△14,615	△9.2
□ 일반회계	125,869	142,712	△16,843	△11.8
□ 국가유산보호기금	18,970	16,742	2,228	13.3

4. 소관 문화유산 : 총 87건

- 국가지정문화유산 85건(국보 6, 보물 37, 사적 36, 천연기념물 6)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2건

5. 소관 위원회 : 궁능문화유산분과 위원회(위원장 : 홍승재 문화유산위원)

- 구성: 문화유산위원 13명(9개 분야, 겸임 2명), 전문위원 20명
- 기능: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유산 현상변경, 궁능활용(장소사용, 촬영) 등 심의